

환경 3惡法과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

요즘 새정부가 성장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환경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처 고위관리들조차 굳이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새정부 출범후 몇가지 주요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지적들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최근 몇달동안 집요하게 환경보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가지 정책이 여론의 비난을 받기 무섭게 유사한 법안이나 정책을 쏟아냈다.

최근 경제개혁 차원에서 내놓은 행정규제완화특별조치법은 바로 환경보존의 틀을 허물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당초 법안초안에 자연보전권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해도 시장 군수가 특별히 고시한 지역이 아니면 공장설립이 가능한 조항이 삽입됐었다. 환경파괴를 부추긴다는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제조항이 삭제됐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조항을 삽입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행령에는 수도권정비계획기본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증



柳浩吉

(매일경제 사회1부 기자)

축이 금지됐던 업종에 대해 1천입방미터 범위내에서 기존공장의 최고 10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이지역 일대의 수질오염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기본법 개정안에도 환경보전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의지의 단면이 엿보인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정비기본법을 개정해 이전축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5개 권역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단순화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가 여론의 반발에 한걸음 물러섰다.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을 감싸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공장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돼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을 존치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유보권역과 개발유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임에 따라 서울 이북지역의 오염부하량이 크게 높아질 것임으로 환경악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거론한 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10개로 구분된 토지용도수를 5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조항은 개정안 13조 3항,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용도가 규제되던 취락지역과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공업지역 묘지 등을 준도시지역으로 묶어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한 것이다.

준도시지역내라하더라도 용도세분을 해놓은 지역은 문제가 덜하지만 용도구역이 세분되지 않은 지역은 이같은 절차마저 밟지 않아도 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해 진 셈이다.

주무 부처인 건설부는 법 시행

령 개정시 환경보전에 신경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연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법안이 시행령 개정단계에서 보전 쪽으로 기울 것으로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건설부는 상수원보호대책 지역내 골프장이라도 준 주거지역으로 분류해 수도권정비정책 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한 시설지구면적을 넓히는 등 환경보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목적이 가용토지를 넓히고 이용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에 있으니 환경부문이 소홀히 다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3개 법이 제·개정되는 동안 환경처일부 관리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벌이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대외업무가 많은 공무원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고 실토했을 정도로.

그러나 환경처가 환경 파괴조항 저지를 위해 얼마나 지혜롭게 저항(?)했느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처 내에서도 엇갈린다. 성과를 내세운다면 몇가지가 있다. 행정규제완화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시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3천입방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상공부 안과 맞서 1천입방미터로 제한했고 수도권정비정책기본법 개정때도 자연보전권역을 존치토록 선방하기도 했다.

지금은 바야흐로 세계는 경제전쟁 그것도 환경을 주무기로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공해방지비용이 낮은 수입상품에 환경상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등 3대 시장에 대한 수출은 91년을 기준으로 2.7%, 즉 10억 2천1백만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법안개정 주도 부처가 환경론자나 여론의 반대를 예상해 마련해 뒀던 양보카드였을 뿐 환경처가 싸워 얻어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다시말해 상징적인 전과들은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획득한 것일뿐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금야금 환경을 파괴하는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환경정책 후퇴의 책임을 환경처에만 돌릴 수는 없다.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아무리 선방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 쥘러가 잘못되어 있다면 「전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세계는 경제전쟁 그것도 환경을 주무기로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공해방지비용이 낮은 수입상품에 환경상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등 3대 시장에 대한 수출은 91년 기준으로 2.7%, 즉 10억 2천1백만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을 포함해 이제까지 체결된 환경협약은 150여개, 이중 무역규제를 담고 있는 협약만도 18개에 달한다.

또 협약과는 별개로 선진각국이 자국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등 앞으로 수년내에 쌍무적 환경통상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정부의 환경정책으로 국내외적 도전을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환경투자중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년도 보다 지난해 0.22%로 올라갔으나 일본의 0.34%미국이 0.57%영국의 0.74%스웨덴의 1.69%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각종 환경규제를 극복할만한 기술 수준 역시 크게 낮은 상태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정 내지 개정되는 환경관련 법안의 내용과 과정개정의도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환경기자인 필자의 과민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